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3월 24일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3. 15.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467호)

나. 회부일자: 2022. 3. 16.

다. 상정일자: 제28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2. 3. 24.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가.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코로나19 발생으로 임시용 건축물을 설치하여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방식의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함(안 제7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해 설치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함(안 제10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명주)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개정사항(제92조2 제1항)을 반영하여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고 의료기관에서 선별진료소 등 감염병 진료를 목적으로 임시(가설) 건축물을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 본 개정 조례안 부칙 제2조는 해당 임시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시기를 2021년 6월 1일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수익적인 성격의 소급입법에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해적인 소급입법과는 달리,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어 소급입법을 규정하고 있는 본 적용례 규정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감염병 발생 초기로 소급하여 의료기관에 제세지원하려는 공익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3월 24일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3. 15.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468호)

나. 회부일자: 2022. 3. 16.

다. 상정일자: 제28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2. 3. 24.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서형석)

가. 제안이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임대차신고제 도입, 통합복지조사관리 및 감염병 대응 업무 증가 등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안정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성북구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변경(안 제2조)

- 지방공무원의 총수 : 1,567명 → 1,586명 (+19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537명 → 1,550명 (+13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0명 → 36명 (+6명)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변경(안 제4조 관련 별표 3)

- 정원 총계 : 1,567명 → 1,586명 (+19명)
- 일반직 계 : 1,556명 → 1,576명 (+20명)
 - 6급 이하 : 1,477명 → 1,497명 (+20명)

- 별정직 계 : 10명 → 9명 (-1명)
- 6급상당 이하 : 9명 → 8명 (-1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명주)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 및 인사권 독립에 따른 관리인력,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로부터 1년(2021. 6. 1. ~ 2022. 5. 31.)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본격 시행됨에 따른 인력 증원 및 통합복지조사관리 및 코로나19 대응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을 위하여 제출되었음
- 현재 성북구 공무원 정원을 1,567명에서 1,586명으로 19명 증원하려는 것으로
- 정원관리기관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집행기관 일반직 6급이하 13명을 증원하며, 의회사무기구 일반직 6급이하 7명을 증원하고 별정직 6급이하 1명을 감원하려는 것임.
-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36조에서는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른 조례안과 달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구의회 권한에 일부 제한이 있음.
- 집행기관의 증원 사유는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2022년 5월 31일로 종료되고 본격 시행에 따른 필요 인력과, 사회적 충원인력, 코로나19 대응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등 13명을 증원하려는 사항이고
- 의회사무기구 증감이유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정책지원관 5명을 증원하고,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별정직 6급 1명을 감원하고 일반직 6급이하 2명을 증원하여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인하여 증원하려는 바 그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 긴밀한 협조와 소통이 요구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인 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법정업무의 확대 등으로 실무인력을 증원 배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타당한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3월 24일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3. 15.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469호)

나. 회부일자 : 2022. 3. 16.

다. 상정일자 : 제28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2. 3. 24.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서형석)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2022. 1.13. 시행) 제81조에서 통장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따라 동장이 임명하도록 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통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담고 조례에서 관련조항을 삭제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4조, 제5조, 제5조의 2 삭제 : 시행규칙으로 제정함으로 삭제
- 제6조(명예반장) : 유명무실한 규정 삭제
- 제7조의 2(비밀유지) :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사적용도 방지를 위해 신설
- 그 밖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맞춤법 및 띄어쓰기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명주)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2022.1.13.시행)되어

“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 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되었음.

- 지방행정의 최일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에 대한 법적 근거와 통장의 임명절차에 대한 규정이 규칙으로 마련되면서 정비되는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